

의안번호	제 670 호
의 결 연 월 일	2017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 조례안

발 의 자	강현삼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17년 8월 21일

충청북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 조례안

(강현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70
----------	-----

발의연월일 : 2017년 8월 21일

발의자 : 강현삼, 임순목, 이광진,
김봉희, 박병진, 장선배,
이양섭

1. 제안이유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을 포함한 재난현장에서 대응활동 중 타인에게 물적손실을 입힌 경우에 상위법령에 따라 보상이 가능하지만 구체적 보상규정을 두어 적극적인 재난현장활동을 보장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소방공무원이 현장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2조)
- 다. 물적 손실에 따른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라. 재난현장활동에서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마. 물적손실에 대한 보상범위를 정함(안 제5조)

- 바. 물적손실에 대한 보상청구방법과 처리절차를 정함(안 제6조)
- 사.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 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 다. 협의 : 소방본부 대응예방과와 협의
- 라. 입법예고 : '17. 8. 14. ~ '17. 8. 20.(의회 홈페이지 게재)

충청북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소속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에 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현장활동”이란 화재 등의 재난현장 또는 위급한 상황에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방공무원의 활동을 말한다.
2. “청구인”이란 재난현장활동으로 인하여 물적 손실을 입고 그 보상을 청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 소방공무원(이하 “소방공무원”이라 한다)이 재난현장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청구인에게 그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4조(기록유지) 충청북도 소방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소방대 현장지휘관으로 하여금 재난현장활동에서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일시·장소·대상·원인·조치내용 등을 기록·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손실보상)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재난현장활동 중 타인에게 발생한 물적 손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법령을 위반하여 재난현장

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 청구인이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방공무원의 재난현장활동 중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3의 생활안전활동 중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3. 법 제25조의 강제처분 등의 활동 중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4. 법 제27조의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중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5.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구조·구급활동을 위한 긴급조치 중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조치로 인해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제6조(청구방법 및 처리) ① 청구인은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손실이 발생한 지역의 관할 소방서장에게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서식의 손실보상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청구서를 접수한 관할 소방서장은 해당 청구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거부하거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청구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보상신청을 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 단,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疎明)하는 경우는

제외

2.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단, 요건과 절차의 흠결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 제외

③ 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를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7조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본부장은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제3항에 따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재심의를 하는 경우 또는 손실보상금액이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는 지급기간을 연장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손실보상 해당 여부 및 청구금액의 적정 여부, 보상금액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도지사가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단,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1. 충청북도 소속 지방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소방관련학 또는 법학 전문가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그 밖에 소방업무와 손실보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이 소집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소방기본법]

제16조의3(생활안전활동) ①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고가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대를 출동시켜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생활안전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붕괴,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활동
2.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3. 끼임, 고립 등에 따른 위험제거 및 구출 활동
4.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5. 그 밖에 방치하면 급박해질 우려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출동하는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7.24.]

제25조(강제처분 등) 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

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②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 외의 소방대상물과 토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
- ③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 ④ 시·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5.30.]

제27조(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진압 등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방용수 외에 댐·저수지 또는 수영장 등의 물을 사용하거나 수도(水道)의 개폐장치 등을 조작할 수 있다.

- ②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발생을 막거나 폭발 등으로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스·전기 또는 유류 등의 시설에 대하여 위험물질의 공급을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5조(구조·구급활동을 위한 긴급조치) ① 소방청장등은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일시사용, 사용의 제한 또는 처분을 하거나 토지·건물에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소방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응급부담)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은 그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해당 재난현장에 있는 사람이나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응급조치에 종사하게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건축물·인공구조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6.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9조(대피명령 등) 법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 및 제4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이란 긴급구조에 관한 권한을 말한다. <개정 2010.8.4, 2012.8.23>

제52조(응급부담의 절차) ①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응급조치 종사명령을 할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조치종사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응급조치 종사를 명한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조치종사명령에 따른 사람에게 응급조치종사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계인에게 응급부담의 목적·기간·대상 및 내용 등을 분명하게 적은 응급부담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응급부담을 명한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응급부담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응급부담명령서를 발급할 대상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소재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해당 시·군·구의 게시판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구두로 응급부담을 명할 대상자가 없거나 그 소재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응급부담조치를 한 후 그 사실을 해당 시·군·구의 게시판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7.]

「충청북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 조례안」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4항

○ 사 유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 의 견

- 재난현장에서 예측할 수 없는 물적손실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비용 추계에 한계가 있어 첨부제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충북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류광희